

# 「IBK 모임통장」 상품설명서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저축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**
- ◆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
## 1 | 상품 개요

- **상 품 명** : 「IBK 모임통장」
- **상품개요** : 자유롭게 입금 및 출금이 가능하며, 모임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개설하는 예금상품

## 2 | 거래 조건

☞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.

구 분	내 용	
가입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만19세 이상의 개인</li> <li>※ 20영업일 이내 입출금계좌 개설 시, 거래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.</li> </ul>	
가입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비대면 전용 상품(SB톡톡+앱)</b></li> </ul>	
가입해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비대면 전용 상품(SB톡톡+앱)</b>, 영업점 내방(수수료 발생)</li> <li>• 모바일뱅킹(SB톡톡+)앱을 통한 해지 시</li> <li>※ 모임장은 아래의 요건을 <b>모두</b>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예금의 해지가 가능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이 예금의 잔액이 없는 경우</li> <li>2. 이 예금과 연결된 모임에 모임원이 없는 경우</li> <li>3. 모임통장 체크카드를 발급한 경우 해당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해지한 경우</li> </ol> </li> <li>단, 사망, 압류 등 사유 발생 시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.</li> </ul>	
가입금액및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제한없음</li> </ul>	
예금자 보호여부	 <p>예금보험공사 <b>보호금융상품</b> 1인당 최고 1억원</p>	<p>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b>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1억원까지"</b>(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</p> <p>※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,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, 예금보험공사,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</p>
가입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모임장) 신청 가능 수 : 고객당 최대 <b>5개 계좌</b> 개설 가능</li> <li>• (모임원) 참여 가능 수 : 고객당 최대 <b>5개 계좌</b> 가입 가능</li> <li>※ 모임통장서비스 1개당 모임멤버는 최대 <b>100명</b>까지 참여 가능</li> </ul>	
제한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양도에 의한 명의변경, 마이너스통장 등의 한도 대출 또는 대출 이자 원리금 납부 계좌로 활용 불가</li> <li>• 계좌에 압류,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</li> <li>• 질권 설정 : <b>불가능</b></li> <li>•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</li> </ul>	
이자지급시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매분기 마지막 월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익일에 원가</li> <li>•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 또는 결산기준일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매일 잔액을 기준으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잔액별 이율을 적용</li> </ul>	

구 분	내 용										
이자소득의 귀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원천징수는 모임장에게 귀속되며 금융소득 납세의무는 모임장에게 있습니다.</li> </ul>										
이자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[변동금리]</b> 이 예금은 금액구간 및 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</li> <li>구간 및 금리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 적용 (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구간별 차등이율 적용)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기준일 : 2026.04.01. 세전 / 단위 : %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08 481 1481 725"> <thead> <tr> <th>금액 구간</th> <th>연이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억원 이하</td> <td>2.50</td> </tr> <tr> <td>1억원 초과~3억원 이하</td> <td>2.70</td> </tr> <tr> <td>3억원 초과~10억원 이하</td> <td>1.50</td> </tr> <tr> <td>10억원 초과</td> <td>0.1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금액 구간	연이율	1억원 이하	2.50	1억원 초과~3억원 이하	2.70	3억원 초과~10억원 이하	1.50	10억원 초과	0.10
금액 구간	연이율										
1억원 이하	2.50										
1억원 초과~3억원 이하	2.70										
3억원 초과~10억원 이하	1.50										
10억원 초과	0.10										
위법계약 해지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</li> </ul>										
자료열람 요구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열람의 목적,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,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,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저축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</li> </ul>										
용어의 정의 및 거래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“모임장”이라 함은 모임통장을 최초로 개설한 자로, 모임장의 변경은 불가합니다.</li> <li>“모임원”이라 함은 모임장으로부터 모임 초대를 받고 모임통장서비스 참여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. 모임원은 모임통장의 거래내역, 잔액 등의 정보조회가 가능하며, 모임통장에서 이체 및 출금거래와 모임통장을 결제계좌로 한 모임카드 발급이 불가합니다.</li> <li>“이용자”라 함은 모임장으로부터 모임 초대를 받고 모임통장서비스 참여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.</li> <li>“나가기”라 함은 모임통장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는 모임원이 본인의 모임통장서비스를 나가는 것(해지 아님)을 말합니다.</li> <li>“내보내기”라 함은 모임장이 자신의 모임통장서비스에서 모임원을 내보내는 경우입니다. 다만 시간 관계없이 해당 모임통장서비스에 모임원 재초대 및 재참여가 가능합니다.</li> <li>“모임종료하기”라 함은 모임장이 자신의 모임통장서비스를 해지하는 것입니다. 단, 참여 중인 모임원이 없고 해당 모임통장계좌에 잔액이 없어야 가능합니다.</li> <li>모임통장계좌에 관한 사고신고, 해지 등에 관한 기능은 모임장만 가능합니다. 모임원은 불가능합니다.</li> </ul>										

구 분	내 용
세제혜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비과세종합저축</b> 가입가능</li> <li>• 가입대상 :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「기초연금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,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,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</li> <li>※ '20.1.1.이후 가입(자동재예치)분부터 「직전3개년도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(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)」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,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</li> <li>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</li> <li>※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</li> </ul>

### 3 |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

·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(1522-79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ibksb.co.kr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계약체결 전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서명(날인)하시기 바랍니다.  
 본인은 IBK저축은행과 예금거래를 함에 있어 **상품설명서**를 제공받았으며,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예금거래의 **주요내용, 거래조건 및 유의사항**에 대하여 충분히 **설명**을 듣고 **이해**하였음을 **확인**합니다.

20 . . . . . 고객명 : (서명/인)